

● 충청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5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허가가 종료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1월 9일
충청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 공시송달

- 근거법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6. 1. 9. ~ 1. 22.)
- 공고대상자 및 변상금 내역

점유자	대상 재산	점유면적(m ²)	연간사용료	점유기간	변상금(원)
예쁜*집 (오지*)	충청북도 영동군	건물사용 85.23	2,017,264	2025. 6. 14. ~ 2025. 12. 31. (201일)	1,333,050
	영동읍 계산로***	건물전용 75.00			
	1층 일부	토지사용 29.46			
	충청북도 영동군	건물사용 36.49	776,930		513,410
영동읍 계산로***	건물전용 32.10				
지하 일부	토지사용 12.61				

※ 변상금 산출내역: (연간사용료 / 365일 X 점유일) X 120%

4. 공고내용

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6년 2월 9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리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042-611-11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상금 사전통지서

(앞쪽)

대상자	성명 오지*(예쁜*집)	사업자번호 317-9****
	주소 충북 영동군 영동읍 금동로***	전화번호 010-34****

부과 내용	재산의 표시	점유면적 (㎡)또는 사용수익유형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			변상금 산출		비고
			재산가액(원)	사용요율 (%)	연간 사용료(원)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액(원)	
총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 1층 일부 총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 ***, 지하 일부	건물 85.23 토지 29.46	건물 85.23 토지 29.46	40,345,278	5	2,017,264	2025.6.14. ~ 2025.12.31. (201일)	1,333,050	사용료의 120%
			15,538,598	5	776,930		513,410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라 귀하가 사용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리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6년 2월 9일까지**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첨부서류 1)를, 변상금을 미루어 내거나 나누어 내려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 1년이 되는 날까지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첨부서류 2) 또는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첨부서류 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고지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2026 년 1 월 9 일

충청지방우정청장

첨부서류	1.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징수유예신청서 1부.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	--

작성 방법

1.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을 적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명, 유형(법 제5조제1항제6호 가목은 (가), 같은 호 나목은 (나), 같은 호 다목은 (다), 같은 호 라목은 (라)로 기재),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과대상란에 점유면적을 기재하고,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 유형을 적습니다.
3. 재산이 법 제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대부료) 산출란의 재산가액 및 사용요율란을 적지 않고 그 세부내역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6호서식]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변상금 사전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항 목	통지 내용	의 견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과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	--

	재산의 표시	부과대상	변상금(원)	유예신청금액(원)	징수유예기간
신청내용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개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변상금 징수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첨부서류	징수유예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국유재산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재산의 표시			신청면적 (㎡)	신청사유	분납방법	비고
	①	②	③				
신청내용	가. 사용료, 대부료의 경우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1년에 ()회	
	나. 매각대금, 변상금의 경우						
						()년에 ()회	
						()년에 ()회	
						()년에 ()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6항 또는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 재산의 (사용료,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을(를) 나누어 내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지방우정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